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11. 26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위원회 (2008.11. 26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신청사추진반장 이 수 복

가. 폐지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사 건립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마포구 구청사 건립기금이 신청사 완공으로 그 설치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으므로 불필요하게 된 본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폐지 내용

1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 함(본문)

2) 이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함(부칙 제1조)

3) 이 조례 폐지에 따른 잔여 기금은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함(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: 박관수)

○ 동 건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, 동 기금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25일 조례 제539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신청사가 완공되어 동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 되었으므로 본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, 2008년 11월 20일 기준 예상 기금잔액 10억3천여만원은 일반회계로 여입될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